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22 선고 2023가단544772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## 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 
담당변호사 성승용

피 고 1. A  
2. B  
변 론 종 결 2024. 4. 8.  
판 결 선 고 2024. 4. 22.

## 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96,957,780원 및 그중 96,796,216원에 대하여 2023. 11. 2.부터 2023. 11. 29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[별지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3. 5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을 52,418,20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원고에게 52,418,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5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.
6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[별지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3. 5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을 67,418,20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B은 원고에게 67,418,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

1)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, ‘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각 대출받았다.

| 구분<br>순번 | 보증일자          | 보증금액       | 보증기한          | 대출과목     | 금융기관 | 대출일자          | 대출금액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차보증     | 2020. 8. 24.  | 9,500,000  | 2025. 8. 22.  | 기업일반자금대출 | C 은행 | 2020. 8. 24.  | 10,000,000 |
| 2차보증     | 2020. 11. 30. | 9,500,000  | 2025. 11. 28. | 기업일반자금대출 | C 은행 | 2020. 11. 30. | 10,000,000 |
| 3차보증     | 2022. 9. 7.   | 81,000,000 | 2023. 9. 6.   | 일반자금대출   | D 은행 | 2022. 9. 14.  | 90,000,000 |

2) 피고 E가 2023. 7. 25. 대출금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2023. 11. 2. C은행에 대하여 위 각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합계 14,326,015원을, 같은 날 D은행에 위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82,536,9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

3) 한편, 3차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23. 9. 7.부터 대위변제

전날인 2023. 11. 1.까지 56일간의 미이행금 81,000,000원에 대하여 연 1.3%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161,550원( $81,000,000\text{원} \times 13/100 \times 56/365$ , 원이하 버림) 및 1차 보증 관련 확정손해금 14원이 발생하였고,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등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8%이다.

#### 나. 부동산의 처분

1) 피고 A은 2023. 5. 18.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B에게 [별지]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150,000,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23. 6. 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0. 14.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채권최고액 102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A, 근저당권자 F주식회사) 및 2020. 3. 30.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채권최고액 9,100,000원, 채무자 피고 A, 근저당권자 F주식회사)가 각 말소되고,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(채권최고액 110,000,000원, 채무자 B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)가 경료되었다.

#### 다. 피고 A의 재산상황

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및 4,200,000원 상당의 차량(2016년식 다마스차량)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갑 제8-1호증, 갑 제9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피고 A에 대한 청구

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

96,796,216원[14,326,015원 + 82,536,958원 - 66,757원(원고가 변제를 자인)]에 위약금 161,550원과 확정손해금 14원을 더한 합계 96,957,780원 및 그중 위 원금 96,796,2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. 11. 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11. 29.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8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피고 B에 대한 청구

#### 가. 피보전채권 성립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어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, 아직 보증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이 2023. 7. 25.부터 대출금상환을 연체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, 실제로 피고 A이 2023. 7. 25.부터 대출금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증인인 원고가 각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#### 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

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

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자기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B은 피고 A에게 합계 66,400,000원을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 A이 원리금을 상환할 대책이 없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이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 보건대,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.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,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.

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50,000,000원 상당(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6,500,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50,000,000원이라고 다투는바, 갑 제7-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선뜻 믿기

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50,000,000원에 매매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50,000,000원 상당이라 봄이 타당하다)이고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 합계가 97,581,796원(F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24. 1. 15.자 회신)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액은 52,418,204원(150,000,000원 - 97,581,796원)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.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위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52,418,204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2,418,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승곤

별지